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중 개정(안)]

지난 3월 30일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정부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중앙조달대상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PQ기준이 1천억원 이상·미만으로 이원화되면서 여기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한 평점 하한이 60%에서 5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이 축소되고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항목과 일괄·대안입찰의 각 분야별 배점이 설계·가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이 바뀐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PQ기준을 1천억원 이상과 그 미만으로 이원화하되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 등 각 평가항목과 배점을 재정경제부 기준에 일치시켰다.

특히 개정기준에서는 변별력 확보차원에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 하한을 종전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와 함께 시공경험 축적은 최근의 동일공사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평가요소별 등급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1천억원 이상 PQ기준의 경우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비재무적 항목은 공동도급대표자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경영상태 평가요소에 차입금 의존도

등 다양하고 새로운 안전성 지표를 추가했다.

1천억원 미만 PQ기준에서는 1천억원 이상 기준에 적용하는 비재무 항목을 제외하되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배점하지 않고 종전처럼 감점제도를 운영토록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가산점제는 회계예규 내용을 반영에 폐지했다.

다만, 다양화된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산서가 적용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며, 분식결산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PQ심사 때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적격심사기준 중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각 분야별 평점조정에 따라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배점이 회계예규대로 조정되었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시공여유율을 평가할 때 시공능력공시액에 대한 미기성 총액만 평가하고 실질자본금과 순유동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업종실적의 만점 기준이 종전 3년·3배 이상에서 5년·5배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

해 분야별 평점기준을 조정, 수행능력점수는 30점에서 20점으로 줄이는 대신 설계점수는 40점에서 45점으로, 입찰가격점수는 30점에서 35점으로 높였다.

■ 시공경험평가기준

1천억원 이상 개정(안)

평가요소	현 행			개 정(안)		
	배 점	등 급	평 점	배 점	등 급	평 점
10년간 실적규모	12.0	A. 300% B. 200% C. 150% D. 100% E. 50%	12.0~7.2	13.0	현행과 같음	13~7.1
10년간 실적금액	10.0	A. 300% B. 200% C. 150% D. 100% E. 50%	10.0~6.0	11.0	-	11~6.0
유사실적	12.0	A. 300% B. 200% C. 150% D. 100% E. 50%	12.0~7.2	14.0	-	14~7.7
5년간 공사실적	8.0	평가동일	8.0	8.0	-	8.0범위내

1천억원 미만공사 개정(안)

평가요소	현 행			개 정(안)		
	배 점	등 급	평 점	배 점	등 급	평 점
10년간 실적규모	11.4	생략	11.4~6.8	12.0	현행과 같음	12.0~6.6
10년간 실적금액	9.0		9.0~5.4	10.0		10~5.5
유사실적	14.4		14.4~8.6	12.0		12.0~6.6
최근 5년간 공사실적	9.6		9.6	8.0		8.0

감시원공사 지적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신 설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관계기관에 의해서 분식결산서로 확인되거나 분식결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식결산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결산서

■ 기술능력평가기준

1천억원 이상 계약(인)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현 행	개 정		
기술자 보유 상황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8.0	A. 3.3 이상 B. 2.6 이상 C. 1.3 이상	8.0 6.2 4.4
	일반기술자	6.0	7.0	A. 26인 이상 B. 20인 이상 C. 13인 이상	7.0 5.4 3.8
	시공지원 기술자	5.5	5.0	A. 5인 이상 B. 5인 미만	5.0 2.7
설비 및 장비 보유상황		5.0	4.0	A. 100% 이상보유 B. 50% 이상보유	4.0 2.2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5.0	5.0	A. 100% 이상보유 B. 50% 이상보유	5.0 2.7
시공 필요 사항	시공경험 축적정도	3.5	2.0	2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10년이내	2.0, 1.7, 1.4, 1.1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 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3.0	4.0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4.0, 3.5, 3.1, 2.6, 2.2

1천억원 미만 계약(인)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현 행	개정(안)		
기술자 보유 상황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8.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8.0 6.2 4.4
	일반기술자	추정가액 1천 억원미만 500 억이상	6.0	7.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이상	7.0 5.4 3.8
		추정가액 500 억미만	6.0	7.0	A. 15인이상 B. 12인 이상 C. 10인이상	7.0 5.4 3.8
	시공지원기술자		5.5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2.7
설비 및 장비(5), 특수공법(5), 시공경험축적(3), 기술개발투자(4) :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평가

1천억원 이상 개정(안)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현행	개정(안)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배율	10.0	4.0 2.0 3.0	- 50%미만, 75%미만, 100%미만, 125%미만, 125%이상	회계예규에 일치 (개정 배점의 100~55%)
• 유동비율 • 영업현금흐름비율	8.0	4.0 2.0	- 150%이상, 120%이상, 100%이상, 70%이상, 70%미만	상동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	2.5 7.0	2.0 2.0 1.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 자산회전율	5.0	3.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 신용평가등급	가산	4.0	A등급 : 4, B등급 : 3 C등급 : 2, D등급 : 0	
• 감사인 의견	감점	3.0	적정 : 3, 한정 : 2, 부적정 : 0	감점제도 유지
• 영업기한		3.0	20년이상 : 3점, 10년이상 : 2점 5년이상 : 1점, 5년미만 : 0.5점	

제6조 제2항 3호 기록에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단서 신설	다만,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분야중 비재무항목(신용평가,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의 의견,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수건설업체 적용기간 변경

현행	개정(안)
• 지정공고에서 정한 지정일로부터 1년 • 주 1) 단,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 주 1) 단,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보며, 우수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해당업종은 다음에 따른다. 1-1) 토목 및 건축 :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1-2) 전기설비 :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1천억원 미만 개정(안)

심사항목	배 점		등 급	평 점
	현 행	개정(안)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배율	10.0	6.0 3.0 4.0	- 50%미만, 75%미만, 100%미만, 125%미만, 125%이상	회계예규에 일치 (개정 배점의 100~55%)
• 유동비율 • 영업현금흐름비율	8.0	6.0 3.0	- 150%이상, 120%이상, 100%이상, 70%이상, 70%미만	상동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	2.5 7.0	3.0 3.0 1.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 자산회전율	5.1	4.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경영상태 평가에 따른 공과규정

현 행	개 정(안)
신설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는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일(일괄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전일, PQ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2. 6. 30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심사세부기준(계약17211-1098, 2001.12.18) [별표2]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종합평점×33/35)하고, 2002. 7. 1부터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여 평점은 한다.

입찰 대안입찰공사의 평점배율 조정

현 행	개 정(안)
• 분야별 배점 : 수행능력 30점, 설계점수 40점, 입찰가격 30점 ※ 수행능력은 PQ심사항목이용	• 분야별 배점 : 수행능력 (30 → 20점), 설계점수 (40 → 45점), 입찰가 격 (30 → 35점)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PQ심사항목 이용 ※ 입찰가격산식 및 일괄입찰 감점 산식 변경